

○ ○ ○ 공 소 청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: ○○○법원장 발 신 : ○○○공소청

제 목 : 몰수·부대보전청구 검 사 ㉠

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·부대보전명령신청이 있는바,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몰수·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.

피 의 자		성명
		주민등록번호 (세)
		직업
		주거
죄 명		
피의사실(공소사실)의 요 지		별지 몰수·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몰 수 · 부 대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		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제1항·제2항, 제34조제1항,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몰수보전관계	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·주소와,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·주소	별지 몰수·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	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	별지 몰수·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부대보전관계	몰수·보전사건의 표시	지방법원 년 제 호
	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·주소	별지 몰수·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	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	별지 몰수·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		판 사 ㉠